

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

의안 번호	8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12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(행정자치부)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,
-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건전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자원배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외대상을 정함.(안 제2조)
- 나. 지원계획 공고, 신청, 접수, 심사절차 및 지원범위를 규정함.
(안 제4조 내지 제6조)
- 다.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설치, 기능, 구성,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7조 내지 제13조)
- 라. 보조받은 사회단체의 보고 및 평가, 운영세칙, 준용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15조 내지 제1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없음.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필요없음
- 라.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: 필요없음

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법령, 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제외대상)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.

1. 법률,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
2. 제1호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
3. 기타 개인, 기업체,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

제3조(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)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·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지원계획·공고 및 신청) ①군수는 매년 지원대상·지원규모·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·인터넷·직접 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.

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접수 및 심사) ①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,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명할 수 있다.

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조정 한 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(이하 위원회)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범위) ①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, 사회단체의 특성, 관계법령·조례의 지원 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

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·통지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·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제외대상인지 여부
3.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,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.

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하되,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농업기술센터소장, 자치행정과장, 문화관광과장, 환경복지과장, 건설과장, 지역도시과장
2. 위촉직 위원 : 지방의회의원, 민간전문가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

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회의 등)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.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간사)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.

제12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3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4조(보고 등)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, 사업비정산,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군수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5조(별도계정의 설정)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.

제16조(수당 등)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8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 및 평창군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關係法令 拔萃

□ 지방재정법

제14조 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·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.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
4.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재정법 시행령

제24조 (공공기관의 범위등) ①법 제14조에서 "공공기관"이라 함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.

②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"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"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

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신청,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(행정자치부)

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자원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조례에 명시하여 「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」를 구성 운영